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 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3월 11일(화) 청와대 공동 기자회견 종료시점(15: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1), 이명재 사무관(044-203-5755)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1.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시 의의

□ 한·캐나다 FTA는 2005.7월 협상 시작 이래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되는 등 우리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최근 상당한 진전을 달성

○ 3.11(화) 개최될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우리와 캐나다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할 경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캐나다는 9개 FTA를 체결하였으나(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페루, EFTA,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NAFTA) NAFTA 제외시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

※ 일본, EU 등과는 장기간 협상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음

□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12년 World Bank 기준)이나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는 100억불 내외로 우리나라 제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바, 이는 캐나다의 대외무역이 미국, 멕시코 등 NAFTA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13년 기준 한-캐나다간 총교역액은 99억불(수출 52억불, 수입 47억불)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제23대 수출대상국이자 제25대 수입 상대국

※ '12년 기준 캐나다의 대NAFTA 국가 교역 비중: 65%

○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긴밀화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3위/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등의 자원부국임

□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갖게 됨으로써 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2년 GDP 규모(World Bank) : (1위) 미국 / (2위) 중국 / (3위) 일본 / (4위) 독일 / (5위) 프랑스 / (6위) 영국 / (7위) 브라질 / (8위) 러시아 / (9위) 이탈리아 / (10위) 인도 / (11위) 캐나다 / (12위) 호주 / (13위) 스페인 / (14위) 멕시코 / (15위) 한국

2.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임

□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

※ (우리)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캐나다)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자동차)**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한 바,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

※ '13년 우리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3억불(수출비중 42.8%)

–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

※ 캐나다: 6.1%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

※ 미국: 2.5% 관세를 유지하다 협정 발효후 5년(2016년) 일괄 철폐

-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 가능

-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시현중인바, 한·캐 FTA 체결로 대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 기대

※ 한국의 자동차 수출 순위 : 1위 미국(75.7만대), 2위 사우디(19.6만대), 3위 러시아(14.3만대), 4위 호주(13.6만대), 5위 캐나다(13.3만대)

-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이나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점유율 : 미국(44.5%), 일본(33.6%), 한국(12.0%)

-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하였으며,

-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합

○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타이어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 기대

※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6%, 즉시/3년철폐), 타이어(관세율 7%, 5년철폐)

○ **(섬유)**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 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됨

○ **(기계·전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 기대

※ 캐측 관세 및 양허: 냉장고(8%, 3년철폐), 세탁기(8%, 즉시철폐), 섬유·화학기계(6.5%/8%, 즉시~5년철폐)

※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 **(농축산물)**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였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

※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하여 한·미(12.3%)/한·EU(14.7%) 대비 보수적으로 합의

- 쌀·과실류 등 211품목 양허제외,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13년) 등 20개 품목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 가능

○ **(서비스·투자)**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 **(정부조달)**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illegible]하*함으로써 FTA를 통한 조달시장 추가 개방

※ 개정 GPA에서 양국은 13만 SDR 이상의 중앙정부기관 상품, 서비스 조달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한-캐 FTA에서는 7만 SDR을 기준으로 양국 화폐로 환산하여 개방(우리 1억원, 캐나다 10만 캐불)

○ **(지리적 표시)**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

3.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방향

□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1. 한·캐나다 FTA 주요 협상경과
2.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3.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4. 한·캐나다 교역·투자 동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 044-203-5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 · 캐나다 FTA 주요 협상경과

□ '05.7월～'08.3월간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09.4월)등으로 협상 중단

○ '12년 이후 7차례 비공식회의를 통해 협상 재개 방안 협의

□ '13.11월 제14차 공식협상 개최(11.25~29, 서울)

○ 총 24개 챕터 중 상품 시장접근 챕터를 제외한 23개 챕터 협상 타결

□ '13.12월 한·캐 통상장관회담시 한·캐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 확인

□ '14.2월 회기간회의를 통한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 합의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2 한 · 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 **(캐나다)**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한국)**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캐나다 시장개방)**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키로 한 바,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

○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철폐, 타이어(7%, 5년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3년철폐 등으로 관세인하하여 수출확대 기대

○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 **(한국 시장개방)**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 (14.7%)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철폐, 돼지고기(22.5~25%)는 5년/13년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설정

※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2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육류)**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

○ **(완성차)**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에 합의

○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 **(전자기기 및 기계 등)**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3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캐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4 서비스 · 투자

□ **(협정문)**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

○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규정

□ **(시장접근)** 캐측은 NAFTA·캐-EU FTA 등 캐측 FTA 최대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 우리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5 정부조달

□ 기본적으로 WTO「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 우리측은 1억원, 캐측은 10만 캐불(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시 참여 가능

< 양국 중앙정부 조달 양허 >

	한·캐나다 FTA		개정 GPA	
상품	한국	1억원 이상	한국	13만 SDR* 이상
	캐나다	10만 캐불 이상	캐나다	13만 SDR* 이상
서비스	한국	1억원 이상	한국	13만 SDR* 이상
	캐나다	10만 캐불 이상	캐나다	13만 SDR* 이상
건설	한국	500만 SDR* 이상	한국	500만 SDR* 이상
	캐나다	500만 SDR* 이상	캐나다	500만 SDR* 이상

* 13만 SDR: 약 2.2억 원, 500만 SDR: 약 82.9억원('14.3.4일 IMF 고시 기준)

□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6 규범

□ **(SPS)**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합의

○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지정 및 SPS 위원회 설치 등

□ **(TBT)** WTO「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 추진(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개최(년 1회 이상) 등

□ **(지적재산권)**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리 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저작권의 보호강화

○ 지리적 표시 관련,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

7 자동차 비관세

□ **(안전기준)**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인용 또는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캐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내국세/배출기준)**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 관련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 (한-EU FTA와 동일)

□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 절차)**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

※ 한·미 FTA상의 스냅백 조항(협정상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한 이후 즉시, MFN 세율까지 인상 가능)은 미도입

참고 3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對캐나다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3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63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8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54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참고 4 한·캐나다 교역 · 투자 현황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3,506 (△3.1)	4,057 (15.7)	3,440 (△15.2)	4,102 (19.3)	4,928 (20.1)	4,828 (△2.0)	5,205 (7.8)
수 입	3,254 (5.3)	4,404 (35.3)	3,535 (△19.7)	4,351 (23.1)	6,612 (52.0)	5,247 (△20.6)	4,717 (△10.1)
무역수지	252	-346	-96	-249	-1,684	-419	488
총교역액	6,760	8,461	6,975	8,453	11,540	10,075	9,922

※ '13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의 제25위 교역파트너 (수출 23위, 수입 25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 계 (~'13)
캐나다의 대 한 국 투 자	51,141 (46)	89,617 (45)	303,275 (52)	480,345 (53)	739,268 (38)	393,769 (38)	387,599 (60)	5,935 519 (7[illegible]
한 국 의 대캐나다 투 자	255,222 (112)	150,899 (83)	4,307,241 (63)	953,524 (76)	1,887,055 (99)	878,314 (101)	880,573 (82)	11,[illegible] (1,[illegible])

※ '13년 현지법인 누적 신고금액 기준 캐나다는 대한국 제10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7위 투[illegible]

□ 한국의 對캐나다 10대 교역품목 현황(2013년)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승용차	6.1	2,227	42.8	유연탄	0	1,587	33.6
무선전화기	0	662	12.7	펄프	0	291	6.2
자동차부품	0-6.1	236	4.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0-3	217	4.6
섬유기계	0-8	119	2.3	칼륨비료	0-6.5	203	4.3
타이어	0-6.5	99	1.9	동광	0	184	3.9
냉장고	0-8	70	1.3	원목	0	153	3.2
합성수지	0-5	67	1.3	가축육류	3-72	91	1.9
직접회로반도체	0	60	1.2	운반하역기계	0-8	76	1.6
밸브	0	56	1.1	건설중장비	0-8	72	1.5
아연도강판	0	55	1.1	곡류	0-30	71	1.5
소 계		3,651	70.1	소 계		2,945	62.4
전 체		5,205	100	전 체		4,717	100

※ MTI4단위를 HS4단위와 연계하여 관세율 계산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